

간도의 중국관할 경위

- 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

최장근*
nihonbu@daeg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4. 청국의 간도 행정조치와 청일 양국의 충돌사건 |
| 2. 시노다의 간도문제 관여의 의도 | 5. 간도 영토의 포기와 '간도협약' 체결 |
| 3. 간도 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인식 | 6. 맺으면서 |

主題語: 篠田治策(Sinnoda jisaku), 백두산정계비(Hoarstone of Mt. Baekdu), 간도(Gando), 중국영토(Chinese territory), 한국영토(Korean territory)

1. 들어가면서

간도영토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¹⁾ 과거 일본이 한중간의 간도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 것은 러일전쟁 직전이고, 직접 개입한 것은 러일전쟁 이후이다.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을 제안한 사람은 당시 주한일본대사였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이다. 그는 1906년 2월에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과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주차사령관에게 제안했고, 외무성의 동의를 얻어 간도지방에 일본관헌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²⁾ 즉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한중간의 간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1907년에 간도 현지에 일본관헌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관헌을 파견하였고, 중국의 간도행정에 대항하여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도행정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간도 현지에서는 일본관헌과 중국관헌이 대립하는 양상이 되었고, 양국 중앙정부 간의 외교문제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 체결되어 간도지역은 중국영토로 인정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 과정에서 간도문제에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1) [간도를 되찾자] 30년 전 국회서 간도문제 다뤘다.] 「weekly 경향」(2004-04-23)「간도와 박정희」, <http://cafe.daum.net/parkaedan/CzzY/43732>. 「반기문 장관 “간도협약 법리적으로 무효”」, <http://www.dragon5.com/news/news2004102204.htm>(2009년8월5일 검색).

2) 최장근(1998)『한중국경문제의 연구-만한국경획선에 관한 연구』백산자료원, pp.1-407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 국제법 전문가 시노다 지사쿠이다.³⁾ 그렇다면 일본이 간도문제에 관여하면서 간도영유권에 대한 영토인식은 어떠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시노다가 실질적인 간도영유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필자는 시노다의 간도영토론은 본질적인 면에 더하여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간도문제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영토권 권원에 의거하여 간도문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없다. 시노다는 「동간도」라는 지역을 설정하여 「동간도」지역을 장악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행연구에서 간도의 범위는 「동간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⁴⁾ 그런데 시노다는 중국을 상대로 전쟁하지 않고 일본제국이 간도를 취할 수 있는 범위를 「동간도」로 국한시켰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논리이지, 간도문제의 본질을 논한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노다의 영토인식을 「동간도」에 국한 시킨 경위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시노다의 박사학위 논문인 『백두산정계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후년 간도문제에 개입하게된 경위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간도문제의 회고」⁵⁾를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노다가 간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장⁶⁾은 있어도 시노다의 간도 영토론의 본질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덧붙여서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간도정책은 오늘날 일본의 독도정책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일본의 독도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교훈삼아 일본의 독도 도발에 올바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 3) 한국문헌연구소편, 篠田治策編著(1973)『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国境資料叢書1, 亜細亜文化社
- 4) 국토통일원편(1969)『백두산 및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 국토통일원, p.1. 국회도서관편(1975)『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일본외무성 육해군성 문서(제1집)』, 국회도서관. 김용국(1970)「백두산고」『백산학보』제8집. 노계현(1968)「간도협약에 관한 외교사적 고찰」『유진오박사회갑기념논문집』『한국외교사연구』海文社. 동북아역사재단편(2009)『국제질서의 변동과 영토문제』, 독도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서울프라자호텔(2009년8월6일-7일). 신기석(1955)「간도귀속문제」『중앙대학교개교30주년기념논문집』. 또『新考 東洋外交史』探究堂(1972), 『간도영유권에 관한 문제』探究堂(1979). 외무부편(1975)『間島西北邊境歸屬問題關係史料拔萃』상. 하권. 유영봉(1972)「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백산학보』제13집. 이선근(1962)「백두산과 간도문제」『역사학보』제17/18합집
- 5) 「회고하면 이미 20여 년 전의 옛이야기이다. 1907년 8월19일 간도에 들어가 간도에서 약 2년3개월간 행동하고 통감부과출소 및 현병은 이렇게 해서 추억 많은 간도에서 철수했던 것이다.」라고 하여 파출소를 철수하여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고한 것이라, 명목적인 진술은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간도문제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篠田治策(1936)『間島問題の回顧』『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p.342
- 6) 이일걸 연구. 한국간도학회편(2009)「간도협약체결10년의 재조명 : 역대정부의 대간도정책 분석」, 한국간도학회, 간도찾기운동본부주최, 서울역사박물관(2009년 8월 25일)

2. 시노다의 간도문제 관여의 의도

2.1 인물상으로 보는 시노다의 의도

시노다는 간도문제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의 간도인식 때문에 일본이 간도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노다는 어떠한 인물인가? 그는 자신에 간도문제에 관여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나는 대학을 나와서 도쿄에서 변호사 사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러일전쟁 때는 여순 공위군(攻圍軍)국제법 고문으로서 종군했다. 자신의 업무를 버리고 결연히 일어나서 종군한 계기는 전적으로 “국가를 위해”라고 말 할 수 있다. 나는 높은 교풍에 도태되어 “국가를 위해”서는 무엇에도 몸을 바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몸을 던질 각오를 갖고 있었다. 3국 간섭⁷⁾ 이후 줄곧 여순 대련을 조차하고 만주 전부를 점령하고 한국을 농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태도로 우리(일본)를 압박해온 러시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러날 여유조차 없었다. 국가의 운명을 걸어서라도 거국일치하여 러시아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군인이 아니지만 무엇이든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신상의 이해득실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2년 이상 종군한 것은 사적인 생활에는 큰 타격을 받았다. 사이토 중좌가 내방하였을 때는 재차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여 특히 어떤 중요한 소송사건을 맡고 있을 때였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중좌가 2.3번 찾아와서 이 문제의 해결이 일천 수백만 리의 걸친 영토의 득실에 관계되고, 또한 제국의 위신과 한국국방에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역설하여 “국가를 위해” 힘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를 위해 내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국일치를 하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누군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내외에 그러한 사람이 없으므로 조선에서 일부러 저를 찾아왔기에 중좌와 잘 아는 관계라는 차원에서도 거절할 수 없어서 일신상의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미력하나마 간도한민의 보호와 간도문제 해결에 종사하게 되었다.」⁸⁾라는 것이었다.

위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첫째로는 당시 시노다의 직업은 교토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⁹⁾ 도쿄에서 변호사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당시 제국대

7)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획득한 요동반도에 대해 러,프,독 3국 간섭으로 일본이 포기해야만 했다.

8) 篠田治策(1936)『間島問題の回顧』『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p.288-290

9) 한국문헌연구소편, 篠田治策編著(1973)『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国境資料叢書1, 亜細亜文化社 참조

학인 교토제국대학 출신들로서의 분위기가 민족주의에 함몰되어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민간인 자격으로 러일전쟁에 종군하여 여순 공위군(攻圍軍)의 국제법 고문으로 종사했던 것이다. 셋째로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만주를 일본의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방해하거나 취하려고 하는 러시아와는 일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시노다는 사적인 이익보다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희생시켜야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당시 간도문제는 일본제국에 있어서 「일천 수 백만 리의 걸친 영토의 득실에 관계되고, 또한 제국의 위신과 한국국방에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여 일본의 침략의 대상인 한국은 물론이고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일본국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섯째로는 시노다의 표면적인 역할을 「간도 한민의 보호와 간도문제 해결에 종사」¹⁰⁾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은 물론이고 간도와 더불어 만주로 일본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간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도 거주 한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요컨대 시노다는 교토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국제법 학자이지만, 간도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원칙보다는 국제법을 악용하여 미래에 일본이 통치할 간도지역을 영토로서 취하려고 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간도문제 개입배경

시노다가 사이토 중좌의 요청으로 간도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시노다는 교토대학 법학부 출신으로 간도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도문제에 개입하였을까? 그 진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시노다는 간도문제 개입배경에 대해, 「간도문제가 청한 양국 간에 수 십 년 동안에 현안이고, 특히 그 지방에는 오랜 옛날부터 산림이 울창하여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도 있다. 또 광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지가 광활하여 개간에 적절하고 진정한 북한의 보물창고라는 것은 당시 지나(중국)에서 돌아온 친구부터 듣고 있었다.」 「중좌(사이토)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외교권을 위임받은 일본정부는 이번에 다년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간도에 우리(일본) 관헌을 파견하고 표면적으로는 청국관헌의 횡포와 마족불량배의 학대에 의해 다수의 재주한민을

10) 국가를 형성하려면 영토를 확보하고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하고, 이들 국민은 배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이 간도를 조선인이 사는 조선국의 영토로서 확보하면,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후에는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간도 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간도한민 보호는 간도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차적 것임을 알 수 있다.

보호하고, 뒤로는 간도문제를 한국을 위하여 유리하게 해결해야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우선 자신(사이토 중좌)이 그 주임(간도파출소장-필자 주)이 되어 대동할 직원의 편성을 명령받았다. 그 구성원 내에 국제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외무성과 통감부에도 교섭해봤지만 적당한 인물을 얻지 못함으로써 나(시노다)에게 국가를 위하여 그 대문제의 해결에 종사해야 하는 동행을 찾고 있는 동시에 다른 직원의 물색에 대해서도 조력을 원했다.¹¹⁾라고 했다.

위에서 시노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로, 「간도문제가 청한 양국 간에 수십 년 동안에 현안이고」라는 것으로 보아 한중간의 간도분쟁에 일본이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 지방에는 오랜 옛날부터 산림이 울창하여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도 있다. 또 광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지가 광활하여 개간에 적절하고 진정한 북한의 보물창고」라는 것으로 보아 일본이 간도지방을 영토로서 개척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간도 관현 파견의 의도에 대해 「중좌(사이토)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외교권을 위임받은 일본정부는 이번에 다년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간도에 우리(일본) 관현을 파견하고 표면적으로는 청국관현의 횡포와 마족불량배의 학대에 의해 다수의 재주한민을 보호하고, 뒤로는 간도문제를 한국을 위하여 유리하게 해결해야하는 시도이다.」라는 것으로 중국이 점령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파출소가 한민보호를 명목으로 청국의 행정을 방해하여 현지에서 사단을 일으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로, 시노다의 임무는 정부정책에 의해 파견되는 일본관현의 한명으로서 국제법 전문가로 가담했고, 적극적으로 파출소 관현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¹²⁾

2.3 간도문제 관련 인물

그렇다면, 사이토 중좌와 시노다가 중심이 되어 파출소의 관원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구성요원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

시노다는 관원의 구성에 대해, 「당시 간도의 상황은 마적과 부정조선인(반일운동단체)이 횡포를 부리고 있고, 마적과 다름없는 무법의 청국군의 폭동이 있고, 교통의 불편은 최악이고 통신기관이 없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어려움을 참으면서 직원을 통제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을 선발하여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토 통감은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협의하여 결국 그의 능력을 인정

11) 전게서, 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288

12) 李漢基(1969)『韓國의 領土』서울대학교출판부. 崔長根(1998)「일본의 한청국경문제 개입배경」『한중국경문제연구』백산자료원, pp.105-107

하여 사이토 중좌를 일본정부에 추천하여 통감부 어용간부로서 문관의 자격으로 간도에 파견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간도현지에 간도파출소의 설치에 「일본정부에 추천하여」라는 문구에서 볼 때 통감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영토정책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간도 파출소 설치에 「통감부 어용간부로서 문관의 자격으로」라는 문구로 볼 때, 간도영토정책은 일본정부의 정책으로 통감부가 통괄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시 통감부 파출소가 상대해야할 대상은 청국의 지방군과 마적, 그리고 반일 조선인들이었다. 그리고 시노다는 통감부 파출소의 직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었다. 넷째, 파출소 소장은 사이토 중좌이었는데, 사이토는 하세가와 주찰사령관이 사이토를 이토 통감에게 추천하여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파출소장 사이토 중좌가 군인이라는 무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관의 자격」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파출소의 임무가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이토를 행정관으로서 한인을 중심으로 간도의 행정을 담당하여 간도를 직접 관할 통치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간도 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인식

시노다는 일본정부의 영토정책의 일환으로 통감부가 주관하는 간도정책에 사이토 중좌의 요청으로 국가를 위해 개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노다는 간도의 영유권에 대해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시노다는 일본정부의 간도정책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후에 간도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 종사했다. 그렇다면 간도의 영유권에 관한 간도역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시노다는 「한국정부의 기록에 의거하여 간도문제의 역사적 연구에 종사했다」¹³⁾라고 하는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간도문제에 대한 영토인식은 한국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었다. 이것 또한 간도를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여 청국에 대항하여 간도를 영토로서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양측의 논리를 중립에서 파악하여 간도문제를 본질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노다가 간도문제에 관여하게 된 배경이 간도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법을 전공한 학자적인 양심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셔널리즘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시노다는 러일

13) 전게서, 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294

전쟁에 민간인 자격으로 스스로 종군할 정도이기 때문에 의용화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노다는 영유권에 관해 간도의 역사에 대해 시노다가 저술한 『백두산정계비』를 분석하여 간도 영유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백두산정계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1. 총설, 2. 이조초기의 두만강방면의 경략, 3. 백두산 청조발상의 전설, 4. 무인지대의 성립, 5. 만주의 발흥과 조선의 정복(만주발흥, 정묘호란, 병자호란), 6. 월경문제, 7. 강희제의 백두산조사, 8. 러청 국경확장, 9. 강희제의 치세, 10. 이만기 사건, 11.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12. 백두산정계비 건립에서의 간광지대 존중, 13.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14. 을유 감계담판, 15. 정해 감계담판, 16. 간도에서의 청한 양국의 자유행동, 17. 일청간의 간도문제, 18. 간도문제의 해결과 백두산정계비」으로 되어있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이조 초기의 두만강 방면의 경략 : 세종 때 회령, 종성, 경원, 경흥에 4군과 6진을 설치했고, 이 지역을 개척한 것은 이조 선조의 융흥한 중요한 지역(발상지)이었기 때문이다.¹⁴⁾

② 백두산 청조발상의 전설 : 청국은 만주실록 개편 제1장에 장백산(백두산)을 청조의 발상지라는 전설을 갖고 있다.¹⁵⁾

③ 무인지대의 성립 : 조선의 인조 때 1627년 정묘호란에 의해 강도희맹에 의해 양국이 무인지대로 정하고 양국인의 월경을 금지했다.¹⁶⁾

④ 만주의 발흥과 조선의 정복 : 청국은 1627년의 정묘호란, 1636년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과 청국은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변경 되었고, 더 이상 양국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봉금지역을 설정했다.¹⁷⁾

⑤ 월경문제 : 양국이 봉금지대를 설정했지만, 청한 양 국민들이 인삼을 채취하기 이해여전히 월경은 계속되었다. 양국민간의 다툼이 여러 번 발생했다.¹⁸⁾

⑥ 강희제의 백두산조사 : 청조의 강희제는 장백산(백두산)이 청조의 발상지라는 전설에 따라 선조의 발상지를 청국 영토에 편입하기 위해 백두산을 조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에서도 백두산을 선조의 발상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¹⁹⁾

⑦ 러청 국경확장 : 러시아와 청국간의 국경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강희제는 청국의

14)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p.10-15

15)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p.16-19

16)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p.20-31

17)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p.32-50

18)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p.51-63

19)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p.64-73

판도를 넓혔는데 북쪽의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1690년 네르친스크조약으로 러청 간의 불명확했던 국경을 확정했다. 이때에 청국은 네르친스크를 러시아에 양보했지만, 흑룡강의 주권을 확정하여 사할린지역을 러시아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²⁰⁾

⑧ 강희제의 치세 : 중국의 황제 중에 강희제가 가장 훌륭한 황제였다. 황제는 국내를 통일하고 남으로 안남(베트남)을 정벌하고, 북으로 사할린(카라후토)에 원정대를 보내고, 러시아의 동방침략을 막고 러청 국경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선조의 발상지인 장백산을 영토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서둘렀다.²¹⁾

⑨ 이만기사건 : 이만기라는 조선인이 청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청국인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전적으로 모든 잘못을 조선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²²⁾

⑩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 청국은 선조의 발상지를 영토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만기 사건을 계기로 백두산 지리를 조사하여 「동위통문 서위암록」이라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그때 토문강 상류 약 1리 반 정도는 수원이 보이지 않아서 아래방향으로 수 리 지점에 높이 5,6척의 석추와 토추가 있어서 서로 연결했다.²³⁾

⑪ 백두산정계비 건립에서의 간광지대 존중 : 청국의 주도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여 「동위토문, 서위암록」으로 국경을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청국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영토를 관리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간광지대는 청조 양국인의 출입을 금하였다.²⁴⁾

⑫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 19세기 말 함경도지역의 가뭄으로 한인들이 봉금지역에 개간을 위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청국과 조선 사이에 국경문제가 발생했다.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되었다. 당시 목극등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려고 했지만, 두만강의 강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토문강 강원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 오류를 범했다. 조선에서는 정계에 의하면 조청간의 국경이 「토문강-압록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압록강과 토문강 이남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조청 간에 간도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²⁵⁾

⑬ 을유 감계담판 : 조선은 백두산정계비의 비문대로 압록강-토문강을 경계로 하려고 토문강의 발원지를 조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청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압적으로 두만강의 본류를 따라 상류를 조사하려고 했다.²⁶⁾

20)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74-82

21)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83-90

22)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91-100

23)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101-121

24)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122-132

25)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133-146

⑭ 정해 감계담판 : 청국은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단정하고 두만강 상류의 서두수로 국경을 결정하려고 했다. 이에 놀란 조선은 홍토수로 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청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담판을 결렬되었다. 조선 국왕은 을유담판과 정해담판의 내용을 모두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²⁷⁾

⑮ 간도에서의 청한 양국의 자유행동 : 한국정부는 먼저 간도에 설읍하여 개척했고, 청국은 후발로 1881년 초간국을 설립하여 간도를 전적으로 청국영토라고 선언하고 거주 한인에 대해 변발청장과 청국국적 취득을 강요했다. 한국은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여 청국지방관에 대항하여 간도를 관리했다.²⁸⁾

⑯ 일청간의 간도문제 : 러일전쟁 직전에 일본은 한청 양국 간의 간도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청간의 영토협상을 보류하고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중재로 간도문제가 해결될 것을 강요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분쟁을 야기한 이후 중앙정부 간에 간도협상을 추진했다.²⁹⁾

⑰ 간도문제의 해결과 백두산정계비 : 간도문제는 청국이 장백산이 청조의 발상지라고 주장하여 간도 영유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완강하여 이를 확인한 일본은 만주의 제 현안을 획득하는 대신에 간도 영유권을 양보하는 교환조건으로 해결되었다. 백두산정계비는 청국이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고, 또한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백두산정계비는 국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국의 압록강-두만강 국경주장은 효력이 없다.³⁰⁾

이상이 시노다의 간도 역사에 관한 연구이다. 시노다는 이를 바탕으로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에 대해,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조 초기에서는 간도지방은 여진부락이 활거한 지방으로서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성격의 지역이었다. 조선은 그들을 조선이 다스리는 오랑캐(藩胡)하고 하여 관직을 주고 조선의 행정의 일부로 삼은 적도 있지만, 예부터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야인에 속하고 행정과 정치가 미치지 않는 미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나라 황제도 건주위 같은 여진부락에 대해 관작(官爵)을 주어 이들을 회유했지만, 힘으로 이들을 통제한 적은 없다. 따라서 당연히 명나라 영토라고도 할 수 없다. 단지 막연히 하늘아래의 미개척지역은 모두 청국 황제의 영토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또 미개한 인민의 집단은 법리상으로 이를

26)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147-192

27)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193-228

28)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229-249

29)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250-273

30)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274-286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여진 부락은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후에 만주가 발흥하고 이들이 여러 부락을 병합하여 국가를 세웠지만, 노이합제는 백두산북방의 루집부, 그리고 지금의 간도에서 동해안지방의 와이합, 고이합을 정벌해서 그 인민을 획득한 것으로 토지는 포기하고 찾지 않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시설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방이 만주영토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지방이 무인지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중립지대가 되었는지 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주는 명나라와 싸우기 위해 나중에 많이 후회했다. 즉 天聰의 和約 때에 조선의 약속문 중에 “各 全 封域”라는 말이 있다.³¹⁾라고 하여 두만강 이북지역의 간도지방을 여진족의 땅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진족은 조선의 변족으로서 명나라의 변족으로 존재하였고, 여진족을 근거로 청나라가 건국되고 난 후에는 이 지역을 무인공광지대로 남기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³²⁾ 위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나라시대에 여진족은 여진부락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명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조선에도 속하지도 않았다. 다만 명나라와 조선의 관직을 받고 있었음으로 서로가 속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조선 초기, 명나라는 막연히 하늘아래 모든 지역은 청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명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없다. 조선은 이 지역을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셋째, 만주국이 성립되었을 때도 인민은 만주국에 포함되었지만, 이 간도지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고 영토로서 포기하여 관리한 적이 없었기에 무인공광지대가 되었다.

그리고 청나라시대의 이 간도지방에 관해서, 「그 봉토(封土; 무인공광지대)라는 것도 지금도 막연하지만, 두만강 압록강을 조선에서 건너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은 분명하다. 만주 측도 그 양 강 의 북방 일대를 무인의 지대로서 포기했고, 그리고 자국에서도 또한 인민의 거주를 금했다. 이처럼 이 지방이 전적으로 무주지이고 무인의 중립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정계비의 건립에 의해 청한 국경이 새롭게 확정된 것이라고 단연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청 북경담판에서도 간도에서 우리(파출소)들이 청국관리들과 논의할 때에도 정계비의 토문이 경계라고 주장했지만, 법 이론으로는 목극등의 정계비 건립은 전적으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입비 당시에 목극등은 그 지점을 도문강 즉 두만강의 발원지일 것이라고 잘못 알았고, 조선 측에서도 현실적으로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강원을 가지고 국경비로 해서

31)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336-337

32) 청국의 발상지였기에 이 지역을 신성시하여 무인공광지로 다스렸다는 주장도 있다. 강석화(1996)「조선 후기 함경도의 지역발전과 북방영토 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60-61

그 발원지에 입비를 세웠기 때문에 양국 관원의 의견은 전혀 합치를 보지 못하고 소위 법률행위의 요소는 착오가 있었다. 청국정부는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수류가 두만강이 아니고 토문강이 되기 때문에 공여지책으로서 후에 정계비의 건립은 청국이 임의로 변경을 조사한 석비로서 국경비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과연 그렇다면 완전히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로서 이것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이 정계비가 당시 국경으로서 확정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간도는 여전히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³³⁾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주측도 자국의 인민의 거주를 금지하고 이 지역을 포기했고, 조선 측도 양국이 합의를 했기에 인민을 도강을 금지하였기에 무인중립지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계비를 설립하였지만, 청국대표 목극등이 정계비 지점을 두만강의 강원이라고 잘못 이해했고, 조선은 토문강이 강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청 양국이 서로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정계비에 의해 양국의 경계가 명확히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청국은 두만강을 양국 경계로 삼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는 국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또한 국제법으로 무효이다. 넷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두산정계비가 국경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간도는 한청 양국의 어느 지역의 영토도 아닌 무인공광지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시대에 들어와서는 간도지방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광저 초년이 되어 청국도 이 간광지대의 개척을 착수하여 한국은 이미 그 수년전부터 지방관이 지권을 발급하여 공적으로 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중립의 성격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양국 모두 200여 년 간 존중해온 중립지대로 약속한 것을 포기한 것이다. 여기서 종래의 무주지로서의 무인의 중립지대였던 간도가 중립의 성격과 무인의 상태를 껌으로써 단지 무주의 땅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³⁴⁾라고 진술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중국보다 먼저 무인 공광지대를 개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국이 후발로 간도지역의 개척에 합세함으로써 무인공광지대로서, 무인지대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결국 간도는 중국과 한국 어느 국가의 영토도 아닌 무주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을유(1885년)담판과 정해(1887년)담판 2번에 걸친 양국정부간의 영토협상에 대해서는 「을유 감계 담판에서는 아무런 해결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정해 감계 담판에서는 한국위원은 일단 두만강 본류 국경선 동의한 것은 분명히 한국 측의 약점이었다. 하지만 한국위원은 이 담판을 상류지방의 문제에서 결렬시키고 귀환했다. 그 후 조선왕은 모든 감계

33)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337-338

34)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39

를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청국정부는 다시 감계할 것을 약속하고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청일 교섭을 개시함에 이르렀다. 그러나 간도문제 발생 이후에는 청국은 국자가에 초간국을 설치하고, 또한 군대를 주둔시킨 적이 있었다. 한국 또한 간도를 관할하는 고지를 발하고 혹은 간도관리사를 파견하는 등의 일을 했지만, 이들은 모두 양국쟁의 중에 속하고 이것 때문에 영토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통감부파출소 설치의 당시에 있어서 간도의 성격은 이미 중립성을 잃고 무인의 상태를 잃고 단지 양국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존재했던 것이다.³⁵⁾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시노다는 간도의 영유권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첫째, 1885년 을유담판에서는 한청 양국 간에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1887년의 정해담판에서는 한국 측이 두만강의 본류를 양국의 경계로 인정하고 상류지방의 문제로 귀결시켰다는 점이 한국 측의 약점이라는 것이다. 셋째, 최종적으로 한국의 국왕이 2번의 걸친 강계담판의 성과 모두를 무효화했다는 것이다. 넷째, 양국간에 간도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청국이 간도지방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실효적 조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영유권 조치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간도관리사를 두고 영토로서 관리를 시작했지만, 이미 분쟁 중인 상태에서의 조치이기 때문에 중립의 무주지인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양국이 간도지방에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분쟁지역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간도지방은 무주지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섯째, 통감부와 출소가 간도에 들어갔을 때는 간도지방에 청국민과 조선인민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는 분쟁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시노다는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 「학술문제로서 냉정하게 연구하면 나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청한 양국의 어느 쪽도 속하지 않고 무인 중립지대였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중립지대는 간광지대라고 하고, 완충지대라고도 한다. 국제조약에 의해 성립하지만, 이 중립지대는 자연적으로 성립되어 청한 양국이 이백 수십 년 간 그 사실을 존중했던 것이다. 대략 중립지대의 영토권은 쌍방의 국가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고, 조약체결 국에 속하는 것³⁶⁾도 있고, 제3국에 속하는 것³⁷⁾도 있다. 이 중립지대는 쌍방의 국가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드물게도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지대이다.³⁸⁾라고 하여 국제법적으로 무인지대로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지대라는 것이다.³⁹⁾

35) 상동.

36) ‘조약’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장근(2014)『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제이앤씨, pp.311-374

37) ‘매입’ 등으로 제3국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계서,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참조).

38)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36

39) 간도 영토에 대한 국제법적 연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 있다. 김명기(1980)『국제법상 남북한

국자가의 청국관현은 여러 번 우리(파출소)에게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파출소는 일단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이상 철수는 없다는 자세로 임했다. 청국은 변무공서를 설치했고, 「파출소와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변무독변으로 육군중장 부도통 진소상과 병변소장 협도통 오록정을 간도에 파견했다.

청국은 파출소가 소속미정의 영토라고 하여 한민의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간도를 전적으로 청국영토로 간주하고 파출소의 행정조치를 부정했다. 당시 파출소의 헌병은 50명이었는데, 청국은 당초 일본대사의 항의로 호위병 376명을 이끌고, 나중에 군인과 경찰을 합쳐서 4300여명을 파견했다. 이에 비해 파출소의 헌병은 당초 50명에서 증원하여 200명이 되었다.⁴²⁾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아서 「사이토 대좌가 경성을 출발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먼저 사단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통감으로부터 엄중하게 훈령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통감부에서는 담판을 통해 간도에서 이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일본정부의 방침은 「어떤 일 있어도 국경수비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입장」⁴³⁾이었던 것으로 보아 일본정부 즉 외무성은 간도를 영토로서 취하겠다는 의욕이 통감부와는 달리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노다의 증언 즉 「청국 측에서는 두만강 이북을 전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행동하고 우리들은 간도는 소속미정의 땅이라는 주장 하에 행동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지 우리는 정부방침을 존중하여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고 북경에서 담판의 해결을 기다리며 한민보호에만 노력했다.」⁴⁴⁾고 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출소는 한민보호를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담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듯한 행동으로 청국을 자극시켜서 청국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간도문제의 타결에 임하도록 유인했던 것이다. 청국의 경우도 「그들이 한꺼번에 우리들(파출소)을 축출하려는 대책은 아니었고 병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한민보호 시설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⁴⁵⁾라는 것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파출소가 한민보호를 명목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고,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4.2 파출소와 청국지방관 사이의 충돌사건

파출소가 한민관리를 목적으로 청국의 행정조치에 대한 부정과 파출소의 간도행정조치로

42)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20

43)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21

44)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322-323

45)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21

인한 청국지방관의 방해로 양국 지방관 사이에 많은 충돌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충돌사건은 청국의 중앙정부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파출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은 1909년 7월로 간도 진입 후 약 2개년을 경과한 시점이다. 종래의 교섭사건과 달리 매우 강경한 태도로 항의해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병력을 사용할 자도 모를 일이었다. 한때는 용정촌에 우리 헌병은 20여명만 주둔할 때도 있어서 만일 용정촌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유린당한다면 파출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재류민의 위험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때 증파 중에 있는 헌병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다행히 7월28일 증파 헌병의 한부대인 67명이 우선적으로 도착했다. 우리들은 경계를 엄하게 해서 다시 공사를 착수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할 수 없었다.」⁴⁶⁾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도발에 의해 생긴 청일 지방관사이의 충돌사건은 천보산사건, 산림봉금사건, 용정촌 일청인 쟁투사건, 이정표목발취사건, 범죄인 탈취사건, 학교생도선동사건, 변발이복장제사건, 두만강도선방해사건, 방곡령사건, 하천평에서의 청병폭행사건, 국자가에서의 폭행사건, 우적동 헌병분견소습격이 때에 청국의 대응은 「청국의 폭행에 관해서는 그때마다 청국관헌에게 엄중한 항의를 했지만, 정당방위의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병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거세져서 결국 용정촌에 병력을 증원해서 우리(파출소) 부근에 초소를 세우고 또 칼을 찬 청국군이 삼삼오오 시내를 순행하고 매일적인 태도를 취했다.」⁴⁷⁾ 「이에 대해 우리들은 직원, 헌병 및 거류일본인을 훈계하여 자중하고 인내하도록 했다.」⁴⁸⁾ 파출소의 간도시정에 대해 청국의 태도는 「그 지방(간도)은 청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①일본은 교변소를 세울 권리가 없고, ②지방 인민 보호는 청국이 스스로 이를 담당하는 것이고, ③통감부파출소의 한민보호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따라서 여러 공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억지로 건축을 하면 청국의 주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을 가지고 이를 저지할 것이다.」⁴⁹⁾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파출소는 「①이 지방은 소속미정의 영토이다. 그리고 현재 북경에서 양국정부간에 교섭중이기 때문에 결코 청국영토라고 할 수 없다. ②한민 보호를 위해서 일본관헌이 소수의 헌병을 대동하고 이곳에 온 것은 처음에 청국정부에 통보를 했다. ③파출소가 한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귀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④이미 순사를 두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교변소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⑤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지방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현상유지하고

46)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326

47)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324

48) 상동.

49)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楽浪書院, p.325

북경에서 경계담판의 해결을 기다려야한다。」⁵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국은 「그들(청국관헌)은 우리(파출소)의 논지를 듣지도 않고 현상유지는 일본측이 지켜야할 것이고, 청국영토 내에서 우리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만약 내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저지할 것이고, 그 때에 충돌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⁵¹⁾고 주장했다.

간도를 전적으로 청국영토 시하는 청국에 대해 「파출소는 정부의 방침을 중시하여 참고 자중하고 온화한 태도를 취했으나 청국관헌은 점점 영토주의를 확장하여 각 곳에서 폭행을 자행하고 우리로 하여금 간도시정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을 만들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파출소)도 방침을 변경하여 단호히 결심해서 청국지방관에서 「향후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소속미정의 땅이라고 행동한 간도를 한국영토로서 행동할 것이고, 또 한민은 청국관민에게 납세할 의무가 없음을 성명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시노다)는 경성에 급히 출병을 요구하기 위해 출장했다」⁵²⁾

파출소(시노다)는 청국지방관(오록정)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파출소의 행동방침을 전달했다. 즉 「귀 서간의 의하면 여전히 간도를 중국영토로 간주하고 또한 재주한인에 대해 전적으로 귀국의 법령을 집행한다는 것은 귀국의 행정의 자유이지만 본관(파출소 시노다)을 관섭해서는 안 된다. 본관이 지금부터는 귀관이 양국관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전횡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심한 것은 청력 6월12일부로 귀관은 새롭게 이 지방(간도)가 청국영토라는 고지를 하여 그 지방의 민심을 걱정스럽게 하고 우리의 보호권을 훼손하려고 한다. 이처럼 하여 교의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지방이 소속미정으로서 일청 양국정부가 교섭연구 중에 있는 것은 귀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귀관 및 귀국관헌은 임의로 한민을 구속하겠다고 고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선포해놓고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말하고 이 같은 비리의 불법행동은 본관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 (중략) 본관도 또한 이 지방을 한국영토로서 제반 시설을 행한다는 것을 특히 여기에 성명한다.(중략) 본래 간도의 한민은 귀국관헌에게 납세할 의무가 없지만 본관은 지금까지 교의를 고려하여 한민 임의로 납세하는 자에 대해 감히 간섭하지 않았지만, 한민으로 하여금 납세의무가 없음을 자각하고 귀국 관헌의 강제에 대해 찾아와서 보호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직무상 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보호권을 행사할 것, 근래 오록정은 이 지방의 소속문제가 양국의 교섭 중에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국가 간의 교의를 무시하고 공문이나 고지로 청국영토라고 적극적인 행동방침을 취하기 때문에 본관도 또한 여기서 이달

50) 상동.

51)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325-326

52)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27

3월부로 공문을 통해 이 지방을 한국영토로 시설을 행할 것을 성명한다. 따라서 장래 귀관 및 귀국관현이 한민에게 각종 납세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할 것을 알기 바란다.」⁵³⁾ 라고 하여 간도에서 청국영토시하는 것에 대해 동등하게 한국영토 시 하여 양국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사실 일본은 파출소가 현상유지정책으로 유지하고 그 사이에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 간도의 이권을 획득하려는 계산이었다.

파출소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청국의 지방관에 밀리지 않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했다. 그래서 통감(이토가 아니고 소네(曾禰))에 대해 「①문제 해결의 필요상 청국측이 행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래 우리는 간도가 소속미정의 땅으로서 행동을 했는데 청국은 어디까지나 자국영토로서 행동을 하는 이상은 우리도 또한 한국영토로서 행동할 것.」⁵⁴⁾라고 한 것은 파출소는 당초부터 한국영토라고 주장하면 청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②간도가 한국영토라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재간도 한민을 통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세력으로서 부족함으로 새로이 군대를 주둔시킬 것.」⁵⁵⁾이라고 하여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간도한민에 대해 청국이 일절 간섭을 못하도록 하고 파출소의 소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청국과의 분쟁을 우려하여 청국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한민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③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큰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유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⁵⁶⁾이라고 하여 조치를 강화하는 목적이 중앙정부 간의 교섭에 도움을 주어 일본에 유리하게 간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노다는 조선에 건너가서 통감을 독대했다. 통감은 「너는 바로 도쿄에 가서 당국에 상세히 설명을 해라 만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권한 내에서 두만강연안에 포병 보병 대부대를 모아서 연습을 시켜서 우리의 위력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사명의 반을 달성했다고 기뻐하고 용감하게 도쿄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도쿄에 도착하지 마자 안봉선 개축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최후의 통첩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급전직하로 만주의 제현안과 함께 간도문제의 해결을 보았던 것이다.」⁵⁷⁾라고 하여 일본정부가 안봉선을 개축한다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일본은 만주의 이권을 획득하고 간도를 청국영토로 인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53)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328-329

54) 상동.

55) 상동.

56) 상동.

57)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31

5. 간도 영토의 포기과 ‘간도협약’ 체결

5.1 간도영토를 포기한 이유

당초 파출소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간도를 취하기 위해 간도정책을 담당했다. 그래서 파출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도현지에 청국지방관이 이미 다스리고 있는 곳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청국지방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서 한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간도의 행정조치를 단행해갔다. 그런데 「나(시노다)는 도쿄에 도착하지 마자 신문에서 간도문제해결을 보고 엄청 놀랐다. 먼저 외무성에 출두해서 고무라 외무대신을 방문했다. 대신은 나를 자주 위로했다. 일청외교의 경과를 설명하고 만주의 제 현안은 완전히 고착상태가 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안봉선 개축문제에서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 청국정부는 일본의 대 결심을 알고 크게 놀라서 일본이 간도에서 양보를 하면 만주의 여러 현안은 모두 일본의 주장을 승인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대국의 견지에서 타산해서 제 현안 해결의 좋은 기회라고 믿고 일청 간에 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⁵⁸⁾라고 했던 것이다. 즉 일본은 만주의 제 현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없고 이 문제로 청일 간에 분쟁이 표면화됨으로써 청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인 행위가 유럽열강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주 제 현안을 위해 제3국인 한국영토를 대가로 포기하는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고무라는 만주의 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파출소원들의 인내자중, 2개년에 걸친 노고 덕분에 라고 자주 위로와 감사의 의를 전했다.」⁵⁹⁾라는 것처럼, 사실 제3국인 한국의 간도문제에 통감부 파출소가 개입함으로써 그 덕분에 일본이 만주 제 현안을 해결한 소득이었던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기타 외무당국도 이 해결은 외무성의 의견만이 아니라 원로회의의 결정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국적 측면에서 해결한 것」라고 하는 것처럼, 외무성 당국의 결정이 아니라 국운과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거국적인 일본정부의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파출소의 생각은 달랐다. 즉 「우리들은 분노를 참았지만, 만사가 이제 끝났다. 지금 와서 분개해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분개함을 감추고 냉정한 모습으로 간도에 돌아왔다.」라고 하여 정부의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못했다. 시노다는 만주는 만주의 문제이고, 간도를 획득하는 것은 전혀 별도의 문제로서 만주의 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간도영토를 희생시킨다

58)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p.331-332

59)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332

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노다는 현장책임자로서 오로지 간도를 식민지로서 개척하는 일념에 있었던 것이다.

5.2 간도협약의 내용

시노다는 간도협약의 체결의 의의에 대해, 「1909년 9월4일 성립한 ‘간도에 관한 협약’은 수 십 년 동안 현안이었던 간도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사실은 태산이 명동하여 쥐새끼 한 마리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 대국적 측면에서 타산하여 상호 서로 양보적으로 해결한 것은 부득이지만 만주 제 현안을 위하여 간도를 희생한 것이 된다. 간도에서 엄청난 양보를 한 것은 2년여 동안 큰 희망을 가지고 활동한 우리들은 실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한국통치상에 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었다.」⁶⁰⁾라고 하여 일본제국을 위해 부득이 하게 대국적인 측면에서 간도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엄청난 양보를 한 것으로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만주제현안과 교환조건으로 희생한 것은 전혀 예상했던 것^{eg} 아니었고, 간도를 중국영토로 인정함으로써 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간도지방으로 인해 중국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①전적으로 간도를 청국영토로 인정하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강원지방에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가지고 경계로 하고, ②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를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해 개방하고, ③종래대로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서 한민의 거주를 승인하고, ④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은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고 청국지방관의 관할재판을 받아야하며, 납세를 비롯한 모든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동등하게 하고, ⑤간도내의 한민소유의 토지 가옥은 청국인민의 재산과 같이 완전히 보호받을 것이며, 두만강 연안에는 도선을 설치하고 상방인민의 왕래의; 자유로 하고, ⑥장래 길장철도를 연결 남경에 연장하고 한국 회령에서 한국철도와 연락하여 ⑦통감부 및 문무 각 파출소원은 2개월 이내에 철수하고 동시에 일본영사관을 앞에서 말한 통상지에 개설한다고 하는 것이다.」⁶¹⁾ 즉, 간도지역을 전적으로 청국영토로 인정하고, 한민의 재판권을 비롯한 관할권은 일본이 정한 간도지역 내에 중국인과 동일하게 중국에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지역을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거주하도록 하고 일본의 영사관을 두도록 하여 일본이 청국영토인 간도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던 것이다.

시노다는 간도영유권을 포기하고 만주 제 현안을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한 것에 대한 인식은

60)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332

61) 전게서,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pp.332-333

「만주의 제 현안을 보면 대부분은 사리 명백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일청 간의 외교문제로 해서 고무라대신이 말한 것처럼, 전혀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⁶²⁾라고 하여 만주의 제 현안은 사리 명확하게 일본의 이권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무라 대신이 제현안의 해결 가능성이 없어서 간도문제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결했다고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국이 간도영토권을 확보한 것에 대해 「이들 제 현안에 대해 청국의 주장은 모두 비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간도영토권을 교환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감의 극치이다」⁶³⁾라고 하여 청국이 간도를 전적으로 취하기 위해 만주에서의 일본의 이권을 악용하여 간도를 뺏겼다는 것이다. 사실상 만주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일본과 러시아간에 제3국인 청국의 이권을 침해한 것이다.⁶⁴⁾ 이를 가지고 청국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시노다의 인식은 내서 널리쯤에 입각한 침략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시노다는 학술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6. 맺으면서

본 연구는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시노다의 간도론은 일본정부의 간도정책을 뒷받침했다. 과연 시노다의 간도론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를 제기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간도문제에 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노다는 ‘국가를 위해’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일본제국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간도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도를 청국으로부터 분할하여 일본이 통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간도의 범위에 관해, 시노다는 동간도의 일부에 국한하고 있다. 서간도를 일본이 점령하였기에 동간도는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이다. 간도의 범위는 병자수호조약으로 본다면 무인공광지대를 양국이 분할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문강 이남이 한국영토가 되어야하고, 정해담판과 을유담판은 청국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진행되었던 것이고, 결국 고종황제가 최종적으로 담판의 진행상황을 인정하

62)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334

63) 전게서,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楽浪書院, p.335

64) 古川万太郎(1991)『近代日本の大陸政策』, 東京書店, pp.15-16

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셋째,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시노다가 언급한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조약이었다. 일본정부가 만주에 있어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간도를 포기하는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한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했고, 당시 전제군주국가인 조선의 황제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황제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3국인 일본이 청국 사이에서 행해진 조약이었으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다.

넷째, 일본이 간도지방에 파출소를 설치하면서 그 목적이 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간도를 취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한민보호를 이유로 간도에서 청국 행정을 방해하는 도구로서 활용했던 것이다.

다섯 번째, 시노다는 중국이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통감부가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한민보호를 명목으로 청국의 행정을 방해하고 간도한민을 직접 행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서 당초 간도를 소속미정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미 청국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조선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제3자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분쟁지역을 인정하도록 하여 양국이 협상테이블에 마주앉게 하여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도록 한 후 권익을 확보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제3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속미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대응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가 만주의 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간도영토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시노다는 이 결정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은 시노다의 내셔널리즘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파출소를 간도에 파견한 후 압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은 무인공광지대를 기준으로 해결되어야 했고, 차선책으로는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백두산정계비는 청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고종 때의 2번에 걸친 답판은 청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 강석화(1996)「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발전과 북방영토 의식」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회도서관편(1975)『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일본외무성 육해군성문서(제1집)』국회도서관
 국토통일원편(1969)『백두산 및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국토통일원
 김득황(1987)『백두산과 북방강계』사사연
 김명기(1980)『국제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화학사

- 김용국(1970)『백두산고』『백산학보』제8집
- 노계현(1968)「간도협약에 관한 외교사적 고찰」『유진오박사회갑기념논문집』『한국외교사연구』海文社
- 노영돈(2008.12)「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백산학보』제82호
- _____(2005.4)「한중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의 시효문제」『백산학보』제71호, 백산학회
- 동북아역사재단편(2009)『국제질서의 변용과 영토문제』독도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서울프라자호텔(2009년8월6일-7일)
- 박기갑(1996)「일반국제법 이론에 비추어 본 남북한 간 가능한 국가승계형태론」『한림법학 FORUM』제5권
- 신각수(1991)「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기석(1955)「간도귀속문제」『중앙대학교 개교30주년기념논문집』
- _____(1979)「간도영유권에 관한 문제」探究堂
- 유영봉(1972)「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백산학보』제13집
- 이근관(1999)「국가승계법 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조약승계를 중심으로 하여-」『서울국제법연구』제6권제2호
- 이석우(2007)『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집문당
- 이선근(1962)「백두산과 간도문제」『역사학보』제17/18합집
- 이현조(2007)「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국제법학회논총』제52권 제3호 통권 제109호
- 李漢基(1969)『韓國의 領土』서울대학교출판부
- 최남선(1973.10)『白頭山觀參記』『육당전집』vol.6, 高大亞研六堂全集編纂委員會
- 崔長根(1998)「일본의 한청국경문제 개입배경」『한중국경문제연구』백산자료원
- 한국간도학회편(2009)「간도협약체결10년의 재조명 : 역대정부의 대간도정책 분석」한국간도학회, 간도찾기운동본부 주체, 서울역사박물관(2009년 8월25일)
-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邊公室編(1974)『中朝, 中蘇, 中蒙, 有關條約, 協定議定書』中國吉林省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邊公室
- 篠田治策編著(1973)『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国境資料叢書 1, 亜細亜文化社
- 古川万太郎(1991)『近代日本の大陸政策』東京書店
- 「반기문 장관 “간도협약 법리적으로 무효”」, <http://www.dragon5.com/news/news2004102204.htm>(2015년3월5일 검색).
- [간도를 되찾자]30년 전 국회서 간도문제 다뤘다.] 「weekly 경향」, 2004-04-23. 「간도와 박정희」, <http://cafe.daum.net/parkaedan/CzzY/43732>(2015년3월5일 검색).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간도의 중국관할 경위

- 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

본 연구는 간도가 중국이 관할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고찰했다. 간도는 일중간의 간도협약으로 중국영토로 고착화되었다. 그때에 일제 통감부가 간도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중국의 행정에 대치하였을 때 시노다 지사쿠가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전,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의 간도론이 일본정부의 간도정책을 지지했다. 본 연구에서는 시노다의 간도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일본은 간도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간도를 청국으로부터 분할 통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시노다는 한국영토로서 간도의 범위에 관해 중국으로부터 분할 가능한 지역으로서 한정하여 ‘동간도’ 지역을 한국영토라고 주장했다. 셋째, 시노다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일방적으로 체결된 간도협약에 관해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간도협약은 당사자인 한국이 아닌 일본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넷째, 일본은 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간도지방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한민을 이용하여 간도를 취하려고 했다. 다섯 번째, 당초 통감부파출소가 간도에 들어갈 때는 청국의 방해로 우려하여 ‘소속의 미정의 땅’이라고 주장했다가, 중국에는 중앙정부간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강도를 높여 ‘한국영토’라고 주장했다.

The Study on Reason to be Gando as China's Territorial Jurisdiction

- The Critical Analysis on Gando Theory of Sinoda Jisaku -

I studied about the proceedings which China can be taken the Kando in this study. Signe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China on the Kando. and then, Kando became Chinese territory. The Japanese government dropped out Kando territory. Instead, the Japanese government wanted to get a lot of profit from Manchuria. Then the Sinoda Jisaku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 Sinnoda Jisagu want to take 'Donggando' as korean territory.

Japan tried to take the Gando. Many South Korean people was living in Gando. Japan had sent troops to the Gando area. Because Japan told to protect the korea people. But japan's claim was a lie. Japan had just used the korea people there. The first time, Japan had insisted there is no owner. gando is territory disputed. Because Japan wanted to avoid interference with China. Later, Japan had insisted korea territory. Because Japan wanted to force negoti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Japan reduced the gando of korean territory as 'East gando' to take China's permission. In the end, Japan was a failure.